

#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4-116호

## 행정처분 사전통지

「건설기술 진흥법」(舊 「건설기술관리법」)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5월 20일  
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

### 1. 대상(3명)

| 성명  |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|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오○경 |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 168번길 이하 생략 | 업무정지 6개월<br>(근무경력 거짓 신고)  |
| 문○혁 |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능앞길 이하 생략       | 업무정지 12개월<br>(건설기술경력증 대여) |
| 동○주 |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감내길 이하 생략      | 업무정지 12개월<br>(건설기술경력증 대여) |

### 2.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

| 성명  |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근거법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오○경 | <b>근무경력 거짓 신고 혐의</b><br>-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408-7 외 1필지<br>신축공사(2023.8.25.~근무중) |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제1항제1호<br>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[별표1] |
| 문○혁 | <b>건설기술경력증 대여 혐의</b><br>- 태온종합건설(주) (2021.2.22.~2021.8.10.)                       |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제1항제2호<br>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[별표1] |
| 동○주 | <b>건설기술경력증 대여 혐의</b><br>- 태온종합건설(주) (2020.10.8.~2021.8.10.)                       |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제1항제2호<br>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[별표1] |

### 3. 의견제출

- 제출기한 : 2024. 6. 20. (목)
- 제출처 :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 
연락처 : 02-2110-6725 / 팩스 : 02-2110-0682 / 전자우편 : leey051@korea.kr
- 제출방법 : 구술·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(의견제출서)

### 4. 안내사항

-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(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)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-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·정도·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(02-2110-672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